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업무상횡령

·횡령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6. 24. 2008고합1040,2008고합1159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박순배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